유니버셜 보험은 종신·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, 납입유예 등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.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금액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.

하지만 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장점만 강조해 팔다보니 소비자가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.

금감원은 올해 종신보험이 103만건 판매됐고,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(3대 생명보험사 기준)은 48%라고 설명했다.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% 늘었다고 했다.

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에는 적립금에서 차감(대체납입)되는데 가입자가 낸 적립금이 고 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. 설계사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"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안 내 도 된다"는 설명만 했다가 소비자가 납입유예 기간에 적립금 고갈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도 있다.

금감원은 "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이나 보험 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"며 "약관에 따라 암 진단 등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납입유예(적립금으로 대체납입)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금감원은 "유니버셜 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이 많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"고 했다.